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-9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 이유

마포의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결정 및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지역원로와 전문가의 건의·자문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문단의 기능(안 제2조)

- 1) 마포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건의·자문
- 2) 구정의 장·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건의·자문
- 3)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·자문
- 4)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건의·자문

나. 자문단의 구성(안 제3조)

- 1)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로 구분·운영, 필요시 전체 회의 개최
- 2) 각 회의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지역원로회의는 25명 이내, 전문가회의는 15명 이내로 구성
- 3) 각 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
- 4)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- 5) 전문가회의 위원은 자치행정, 복지, 경제, 관광,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
다. 위원장 등의 직무(안 제4조)

- 1) 각 회의 위원장은 각각 회의를 대표하며, 소관 회의의 직무를 총괄
- 2)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회의의 의장이 됨
- 3) 각 회의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

라. 위원의 임기(안 제5조)

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마. 위원 등의 해촉(안 제6조)

위원 등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해촉을 할 수 있음을 규정

바. 의견청취(안 제10조)

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·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2012년도 예산 반영(참석수당, 업무추진비, 회의운영비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1.10.20~11.09) 결과 : 의견 없음
- 2)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단순한 자문 성격으로 부패영향 자율평가 제외 대상임
- 3) 붙임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의 건의·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
2. 구정의 장·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
3.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자문단은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(이하 “각 회의”라 한다)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 및 운영하며,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각 회의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, 지역원로회의는 25명 이내, 전문가회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.

③ 각 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⑤ 전문가회의의 위원은 자치행정, 복지, 경제, 관광,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각 그 회의를 대표하며, 소관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각 회의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자문단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 등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단의 위원장, 부위원장 또는 위원(이하 "위원 등"이라 한다)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 등이 질병,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

제7조(간사와 서기) 각 회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,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각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구청장의 요청 또는 각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회의록) 각 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관리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 등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자문단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제5조의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